

#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

2022.3

환 경 부



## ❏ 목 차 ❏

1.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개요 .....	4
2. 부과대상 및 기준 .....	6
3. 감면 .....	8
4. 부과 및 징수절차 .....	8
5. 징수금의 교부 및 사용 .....	14
6. 장부관리 및 보고 .....	16
7. 준용규정 .....	16
8. 관련 서식 .....	17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	30
〈참고 2〉 생태계보전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	81

## 가. 제도의 개념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

## 나. 제도의 도입 경위

- 자연환경보전법('97.8)에「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신설('99.1.1 시행예고)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 제도의 폐지를 의결('98.9.25)
-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결정에 이의제기, 재심사 요구('98.10.22)
  -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부과방식 등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시행함이 바람직
- 규제개혁위원회는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심사 유보('98.11.20)
  - \* 자연환경보전법(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시기를 '01.1.1로 연기('99.2.8)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개선안\* 마련(환경부)
  - 제도개선 연구용역 시행('99.5 ~ '00.1, 한국환경경제학회)
  - 제도의 개선(안) 마련 및 규제 재심사 요청('00.1.28)

### < 제도개선(안) 요지 >

- 생태계의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제도 신설 등
  - \* **부과방식** : 사업비 기준(총사업비의 0.1 ~ 0.15%) → 훼손면적 기준(250원/m<sup>2</sup>)
  - \* **감면대상** : 공공사업 감면(30 ~ 100%) → 국방·군사시설만 감면(100%)
  -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제도** 도입(납부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실시한 경우)

-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규제 재심사('00.3.24)
  - 제도의 폐지 여부 등을 정부에서 최종 결정토록 위임
- 제도의 개선(안)대로 시행키로 의결('00.11.11 차관회의, '00.11.14 국무회의)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제출('00.11.20), 공포('01.4.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1.9.29) 및 시행규칙('01.10.13) 개정·공포
- 자연환경보전법('02.12.26) 및 시행령('02.12.31) 개정

- 바다와 바닷가 및 토지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의 지역계수 조정
- 자연환경보전법('04.12.31) 및 시행령('05.12.30), 시행규칙 ('05.12.30) 개정
  - 법 제46조제3항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상한액 확대(5억 원→10억 원)함
  -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 : 생태계훼손면적 산정을 위한 훼손행위를 현실성 있게 보완
  -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액별 분할 납부횟수 제한(12회 이내)
  -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 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서식(별지 제11호)을 개정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07.4.5)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인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바닷가에서 추진되는 사업에는 부과제외
  -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아닌,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
- 자연환경보전법('07.5.17) 및 시행령('07.11.18), 시행규칙 ('07.11.18) 개정
  - 부과대상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개발면적 3만㎡ 이상)
  - 반환사업 시행주체 확대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추가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절차 개선
- 자연환경보전법('13.3.22) 및 시행령('13.9.23, '14.12.9) 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
  -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차등 지급제 도입
  -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사용 용도 조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300원으로 상향 조정
-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시행령('18.5.29) 및 시행규칙 ('18.5.29) 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으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법 시행 전에 승인 받아 시행 중인 사업 포함)
  -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에 생태계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추가
  -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 횟수 완화
  -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 인·허가 등 취소 시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시행령('22.1.6) 및 시행규칙 ('22.1.6) 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상한액(50억원) 폐지
  - 개발 대상지의 생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토지용도에 따른 지역계수 외에 생태·자연도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 추가
  -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할 때 사업완료 이전에 선급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퍼센트에서 사업비의 70퍼센트로 상향

2

부과대상 및 기준

**가. 부과대상(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환경영향평가법」 제 42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추가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대상규모 :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이 5천㎡ 이상
  - ※ 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적용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채광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 또는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
  - ※ '07.11.18 이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

**나. 부과제외(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한함

## 다. 부과시점(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 부과대상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 내용 등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권자에게 통보
  - 인·허가 등을 통보받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권자는 1개월 이내에 부과

## 라. 부과금액 산정기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 '01.10.8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 >

$$\text{생태계보전부담금} = \text{생태계 훼손면적(m}^2\text{)} \times \text{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m}^2\text{)} \times \text{지역계수(0~4)}$$

< '22.1.6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등을 요청한 부과대상사업 >

생태계 보전 부담금	①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원/m <sup>2</sup> )	×	$\frac{\left\{ \begin{array}{l} \text{②용도지역별} \\ \text{훼손면적}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③용도} \\ \text{지역계수}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④생태·자연도} \\ \text{권역·지역별} \\ \text{훼손면적(m}^2\text{)}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⑤생태·자연도} \\ \text{권역·지역별} \\ \text{지역계수} \end{array} \right\}}{2}$
------------------	---------------------------------------	---	--

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m<sup>2</sup>('15.1.1부터 적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②④ 훼손면적(m<sup>2</sup>)의 산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 다음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균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경우는 훼손면적에서 제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溜池)·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 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 동 규정 시행일인 '01.10.8 이후 설치된 무허가 시설, 비닐하우스 등은 적용 제외

③⑤ 지역계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별표2의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 2) 1) 외의 지목인 경우: 0
- 녹지지역: 2
- 생산관리지역: 2.5
- 농림지역: 3
- 보전관리지역: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4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보전관리·생산관리 등과 같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 지역계수

-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녹지지역 계수 적용
-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 보전관리지역 계수 적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준용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 2
-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 3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 4
-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5

**3**      **감면(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의5)**

○ 면제대상

-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

1. 자연환경복원사업(100%)
  - 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2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 지역에서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100%)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100%)
4.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50%)

## 4

## 부과 및 징수절차

### 가.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 나. 사업의 인·허가 통보(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 통보기관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처분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통보내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훼손면적
- 통보서식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통보시점(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 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확정한 날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참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참고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사·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한 날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참고
- 인·허가 등의 취소 통보
  - 인·허가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다. 납부통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통보를 받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권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납부통지
  -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납부고지서 통지
  - 납부고지서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라. 신용카드 등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

-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21-206호, 2021.10.21. 제정)

납부대행기관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주)광주은행, KB국민카드(주), (주)농협은행,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주)한국씨티은행, 현대카드(주)	

**마. 분할납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분할납부 대상
    -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분할납부 사유
    -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분할납부 기간
    - 3년 이내의 기간이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2년 이내임

○ 분할납부 횟수

- (1억 원 이하) 2회 이하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3회 이하
- (2억 원 초과) 4회 이하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2회 이하로 함

※ 분할납부 시에는 납입 회차별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분할납부 처리절차

- 분할납부 신청 : 사업자 → 시·도

※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분할납부 처리결과 통지 : 시·도 → 사업자

※ 분납 사유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분할납부 처리결과 통보(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바. 재부과 및 환급(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1조)**

○ 재산정 대상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 등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 재산정 결과 조치사항
  - 부과·징수권자는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
  - 재부과·정상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재산정 신청 및 처리
  -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부과·징수권자는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사. 정 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 정산 대상
  - 부과·징수권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 등이 변경되어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나는 경우
- 환급신청
  - 환급받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산시 조치사항
  - 부과·징수권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
  - 부과·징수권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사. 강제징수(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
-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 독촉기간 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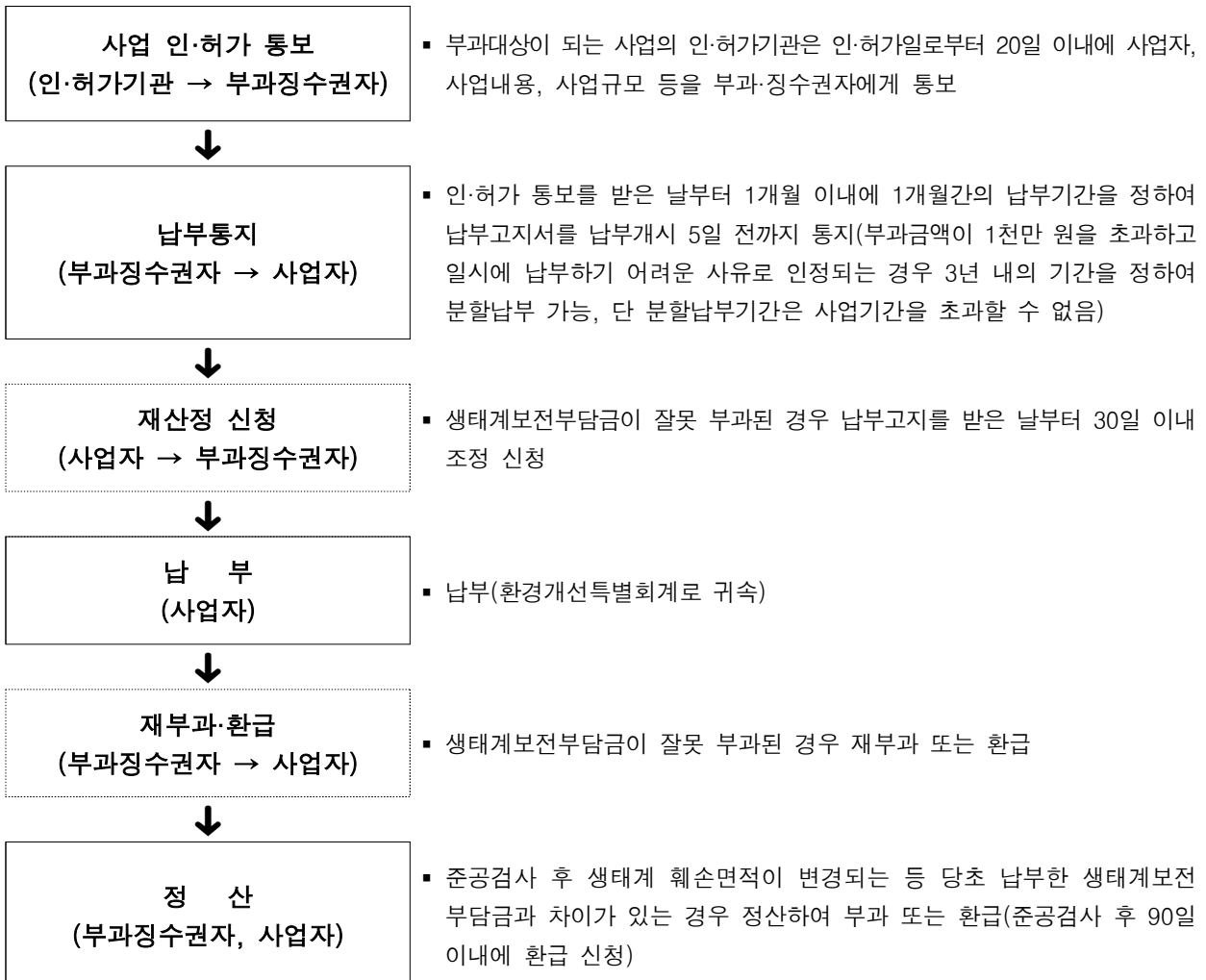
### 아. 부과취소(부과는 하였으나 미납부시)

- 당초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인·허가 등의 취소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부과취소

## 자. 결손처분(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의2)

- 생태계보전부담금 결손처분이 가능한 대상
  -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는 제외함

### <부과·징수 절차>



## 차. 부과누락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이행사항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환경부, 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여 통보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경우 ‘협의내용 통보문서’ 본문 및 ‘협의내용 서식 Ⅲ. 행정사항’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기재

### <시행공문 작성 예시>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므로 동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내용 작성 예시>

Ⅲ. 행정사항

1. 승인기관장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므로 동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인·허가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및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자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므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

-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기관(시·도)에 반기 1회 정기적으로 통보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여부 등록(반기 1회, 자연생태정책과)
  - 환경부는 부과징수 실적,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을 비교하여 부과 누락여부 검증(년1회 이상, 자연생태정책과)
- 2) 협의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토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인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인·허가 담당자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규정 숙지, 담당자 변경시 업무인계 철저
- 3)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기관(시·도)
- 협의기관에서 통보하는 반기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자료를 토대로 적정 부과 및 누락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각 시·도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등)에서 관내 인·허가 담당자(부서)에 대한 교육 및 안내공문 발송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부과누락 방지를 위한 공문발송 조치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가 누락된 사업자에 대해 부과조치 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부과·징수실적 서식) 활용. 비교란에 부과누락사유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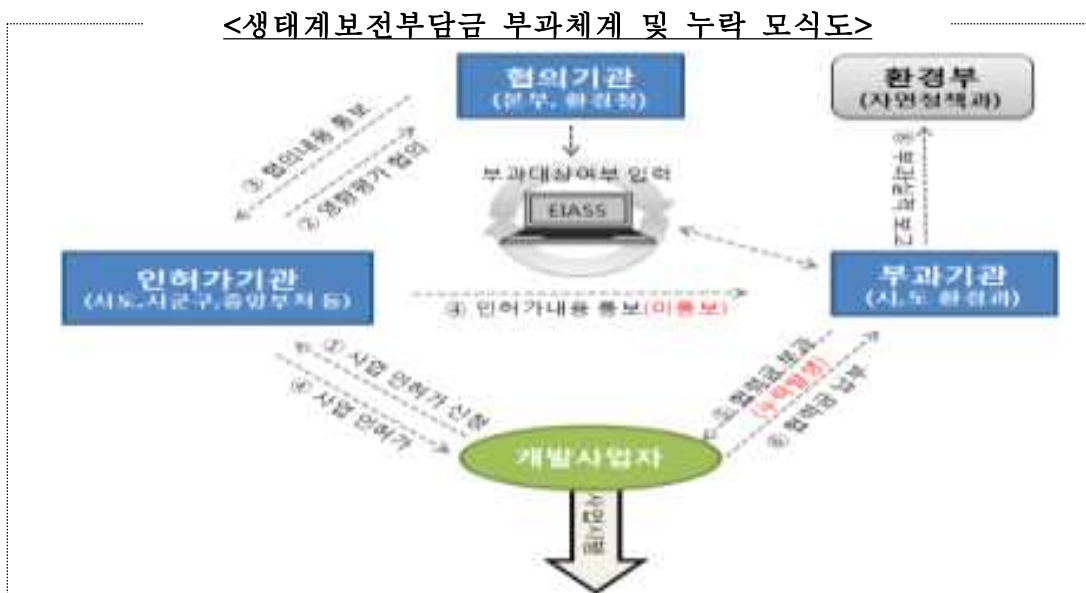
#### 4) 노천탐사·채굴사업 관련

- 채굴계획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이 5천㎡ 이상
  - 「광업법」에 의한 채굴계획인가 즉시 인가내용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특히, 최초 채굴계획인가 후 개별법 적용을 받아 산지 또는 농지전용 허가 등을 추가 취득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인가내용 통보체계 확립

※ 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적용

####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활용(공통)

- 부과권자인 시·도 부담금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의사업 정보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을 확인



**5 징수금의 교부 및 사용(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5항 및 제49조)**

**가. 징수금 교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 징수액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감액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하고 당해 시·도지사에게 교부
  -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내에서 차등 지급
  - 기본 징수율: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 감액금 :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함
  - ※ 교부금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도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징수율 확정 시,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
  - 교부금은 분기 1회(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교부를 원칙(기획재정담당관실)
  - ※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59호, 2022.3.23 개정]

<교부금액의 산정방법>

구 분	징수율별 교부금액 산정방법
1. 기본징수율 초과 징수	■ 10% 이상 초과 : {징수액 × (0.5 + 0.1)} - 감액금
	■ 10% 미만 초과 : {징수액 × (0.5 + 초과 징수율)} - 감액금
2. 기본징수율 범위내 징수	■ {징수액 × 0.5} - 감액금
3. 기본징수율 미달 징수	■ 10% 이상 미달 : {징수액 × (0.5 - 0.1)} - 감액금
	■ 10% 미만 미달 : {징수액 × (0.5 - 미달 징수율)} - 감액금

**나. 교부금의 사용**

- 시·도지사가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
- 교부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한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함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자연환경복원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4. 법 제19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5.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6. 법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7. 법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8.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
9.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0.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11.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12.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자료: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시행규칙 제34조의2)

## 6

### 장부관리 및 보고

#### 가.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과·징수권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 나. 보 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의2와 제42조)

- 부과·징수권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20~21호 서식)
  - ※ 매년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연보로 작성
-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 7

### 준용규정

- 이 업무편람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별지 제6호의2 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부과 내용	면 적 (㎡)				
	금 액 (원)				
처리 결과	분할납부여부		[ ] 분할납부		[ ] 일시납부
	분할 납부 사항	납부기한	제1기	제2기	제3기
		생태계보전 부담금 분할납부액			
	처 분 사 유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

■ [별지 제7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대장

일련번호	납부자					생태계보전 부담금			훼손면적(m <sup>2</sup> )										재산정내역				
									토지용도별						생태·자연도 등급별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부과일자	납부일자	계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	녹지	생산관리	농림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금액	사유	비고

기관명						
우 000-000/ 주 소 / 전화 ( )000-0000/ 전송( )000-0000 000과 과장 000 사무관 또는 서기관 000 담당자 000						
문서번호 수신 제목			시행일자 발신 [인] 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①계	②생태계 보전부담금	③가산금	④미수 생태계 보전부담금	⑤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생태계보전 부담금	⑥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결정 일자	⑦납부 정산 환급 반환 행위 및 계좌 번호
⑧(재부과·정산부과·환급 또는 반환) 사유						
⑨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3항·제4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p><b>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신란에는 재부과·정산부과·환급 또는 반환할 납부의무자의 상호·성명·주소를 명시합니다.</li> <li>2. ⑧사유란에는 재부과·정산부과·환급 또는 반환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li> </ol>
---

■ [별지 제9호 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당초부과 내역	납부통지서 수령인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시	생태계보전 부담금액		
	납부기한 또는 납부일시			
재산정 내역	재산정신청 사유			
	환급청구금액			
	환급금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 [별지 제10호 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 대상사업	사업명				
	위치				
	면적				
정산내용	구분	훼손면적(㎡)		산정근거	
		당초	변경 후		
	용도지역	계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			
		녹지			
		생산관리			
		농림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			
	환급청구금액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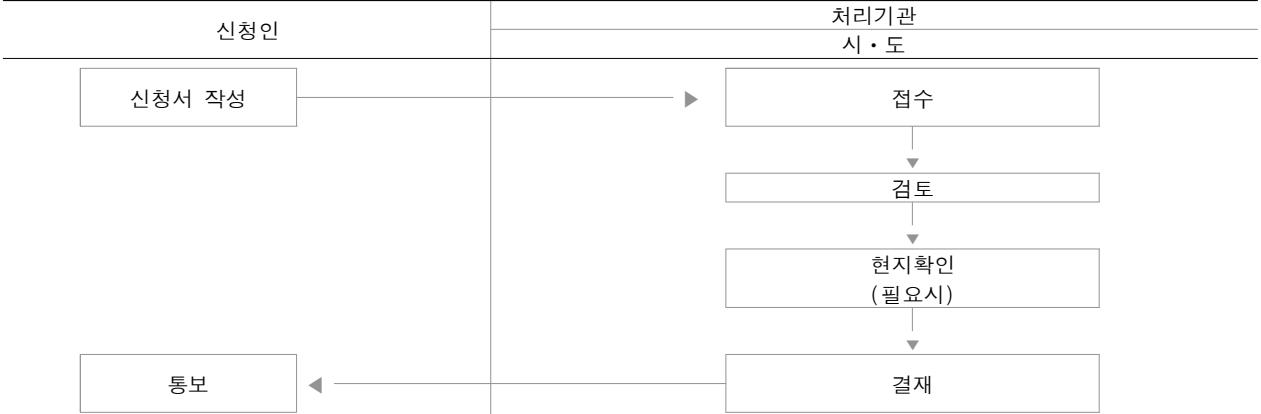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별지 제10호의2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

1. 교부금 현황

구 분	교부금액(원)	사용금액(원)			비고
		계	부과·징수	용도사업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올해 계획					

2. 세부 사용실적

용도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간 사업비*)	사용실적
합계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 ·복원사업				
2. 자연환경복원사업				
3.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 지등의 확보				
4.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의 토지등의 매수				
5. 자연환경보전·이용시 설의 설치·운영				
6. 도시생태복원사업				
7. 생태통로 설치사업				
8.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 사업의 조사·유지·관 리				
9.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0.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보전사업				
11. 훼손·단절된 생태축 의 복원사업				
1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 연간사업비는 사업이 2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부과대상사업	사업명	
	위치	사업면적(㎡)
	사업내용	

사업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인·허가등 내용	근거 법률	인·허가등 명칭
	인·허가등 처분 / 처분취소일	인·허가등 기관
	인·허가등 담당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생태계 훼손면적	구분		사업면적(㎡)	훼손면적(㎡)	
	용도 지역	계			
주거· 상업· 공업· 계획관리 지역		지목이 전·답·임야·염전 ·하천·유지 또는 공원인 경우			
		그 밖의 지목인 경우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 자연도 의 권역· 지역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일련 번호	사업지역 토지현황							훼손면적 편입	
		시·군·구	읍· 면	동· 리	번지	지목	용도 지역	생태· 자연도 의 권 역·지 역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이용 계획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별지 제20호서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년   반기)

1. 생태계보전부담금(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건수:           건,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건수:           건)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 구분	사 업 개 요				부과 연월일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납부 연월일	분납 여부	분납 일정	비고
			사업자	승인기관	승인 연월일	사업규모 (km, m <sup>2</sup> )							

2. 가산금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 구분	사 업 개 요				부과 연월일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납부 연월일	분납 여부	분납 일정	비고
			사업자	승인기관	승인 연월일	사업규모 (km, m <sup>2</sup>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작성예시>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00년      상반기)

1. 생태계보전부담금(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건수:      7 건,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건수:      3 건)

일련 번호	사 업 명	사업 구분	사 업 개 요				부과 연월일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분납 여부	분납 일정	납부 연월일	비고
			사업자	승인기관	승인 연월일	사업규모 (km, m <sup>2</sup> )							
총계(과년도 총계+현년도 총계)								1,060,000,000	880,500,000				
과년 총계								730,000,000	650,500,000				
2019년 소계								580,000,000	500,000,000				
20 19	1 레포츠티크 조성사업	도시개발	000	000	2018-12-17	1,624,410	2019-02-14	500,000,000	500,000,000	일시납		2019-02-14	환경영향평가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	000	000	2019-06-02	120,800	2019-07-18	80,000,000	-	체납			사전환경성검토
2020년 소계								150,000,000	150,500,000				
20 20	1 체육시설(골프장) 사업	골프장건설	000	000	2019-12-01	1,369,000	2020-01-09	150,000,000	150,000,000	3회 분납	20-05-01 20-07-30 20-10-31	2020-05-01	환경영향평가
	2 토석채취	노천탐사채굴사업	000	000	2020-11-28	63,608	2020-12-14	500,000	500,000	일시납		2020-01-14	환경영향평가 (미도래)
현년 총계								330,000,000	230,000,000				
20 21	1 00부대 이주대책사업	부대이전	000	000	2020-12-17	58,088	2021-01-04	30,000,000	30,000,000	일시납		2021-01-09	환경영향평가
	2 00국도건설 사업	도로공사	000	000	2020-10-19	198,461	2021-03-06	100,000,000	-	체납			환경영향평가
	3 00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	000	000	2021-05-11	259,360	2021-05-25	200,000,000	200,000,000	일시납		2021-05-30	환경영향평가

\* 작성사업(사업명)은 2021년에 부과·징수한(21년 이전에 부과하였으나 체납된 사업 포함) 사업을 기재

\*\* 부과연월일은 최초 부과연월일을 기재

\*\*\* 2020년에 부과하였으나 납기 미도래로 2021년에 징수된 사업의 부과금액은 부과금액 소계와 총계에서 제외

\*\*\*\* 납부연월일은 실제 납부일을 기재





〈참고 1〉

##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22. 1. 6 시행)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b>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b> &lt;개정 2021.1.5&gt;</p> <p>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p> <p>&lt;개정 2021. 1. 5.&gt;</p> <p>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lt;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li>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li> <li>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li> <li>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li> <li>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p> <p>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lt;신설 2013. 9. 23.&gt;</p> <p>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10. 12. 28., 2013. 9. 23.&gt;</p> <p>[전문개정 2007. 11. 15.]</p> <p>[제목개정 2022. 1. 6.]</p> <p>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lt;개정 2007. 4. 4., 2007. 11. 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li> <li>2. 식물이 균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li> <li>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li> </ol>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9. 12. 14., 2015. 6. 1., 2022. 1. 6.&gt;</p> <p>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溜池)·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p> <p>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lt;개정 2014. 12. 9., 2018. 5. 21., 2022. 1. 6.&gt;</p> <p>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 &lt;개정 2022. 1. 6.&gt;</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lt;개정 2007. 11. 15., 2022. 1. 6.&gt;</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7. 11. 15., 2022. 1. 6.&gt;</p> <p>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p> <p>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p> <p>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p>	<p>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22. 1. 5.&gt; [제목개정 2022. 1. 5.]</p> <p>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lt;개정 2018. 5. 28.&gt;</p> <p>1. 1억원 이하 : 2회 이하</p> <p>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p> <p>2. 2억원 초과 : 4회 이하</p> <p>②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5.&gt;</p> <p>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p>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gt;</p> <p>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lt;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gt;</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6.]</p> <p>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와 같다. &lt;개정 2022. 1. 6.&gt; [전문개정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p> <p>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li> <li>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li> <li>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6.&gt; [제목개정 2022. 1. 6.]</p> <p>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22. 1. 6.&gt;</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6.]</p> <p>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p>	<p>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2009. 6. 30.&gt; [전문개정 2007. 11. 16.] [제목개정 2022. 1. 5.]</p> <p>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5.&gt; [제목개정 2022. 1. 5.]</p> <p>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 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22. 1. 5.&gt; [제목개정 2022. 1. 5.]</p> <p>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22. 1. 5.&gt; [제목개정 2022. 1. 5.]</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p>	<p>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6.&gt;</p> <p>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6.&gt;</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6.&gt;</p> <p>[제목개정 2022. 1. 6.]</p> <p>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lt;개정 2022. 1. 6.&gt;</p> <p>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p> <p>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lt;개정 2022. 1. 6.&gt;</p> <p>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 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22. 1. 6.&gt;</p> <p>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5. 21.] [제목개정 2022. 1. 6.]</p>	<p>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5.&gt;</p> <p>1. 토지의 용도별 및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p> <p>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목개정 2022. 1. 5.]</p> <p>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5. 28., 2022. 1. 5.&gt; [본조신설 2013. 9. 23.]</p> <p>[제목개정 2018. 5. 28.]</p>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lt;개정 2020. 5. 26., 2021. 1. 5.&gt;</p> <p>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 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lt;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gt; [제목개정 2021. 1. 5.]</p> <p>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5. 26., 2021. 1. 5.&gt;</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5. 26., 2021. 1. 5.&gt;</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5. 26.&gt;</p>	<p>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13. 9. 23., 2022. 1.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li> <li>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li> </ol> <p>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lt;개정 2022. 1. 6.&gt;</p> <p>[제목개정 2022. 1. 6.]</p> <p>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lt;개정 2022. 1.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li> <li>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훼손면적</li> </ol> <p>[제목개정 2022. 1. 6.]</p>	<p>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lt;개정 2007. 9. 27., 2007. 11. 16., 2008. 12. 31., 2012. 7. 20., 2013. 9. 23., 2018. 5. 28., 2022. 1.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확정한 날</li> <li>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li> <li>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li> <li>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li> </ol>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lt;개정 2013. 3. 22., 2020. 5. 26.&gt;</p> <p>②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20. 5. 26., 2021. 1. 5.&gt; [제목개정 2021. 1. 5.]</p> <p>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li> <li>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li> <li>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금액이 체납 처분비에 총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li> <li>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li> <li>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총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li> <li>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21. 4. 13.]</p> <p>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p>		<p>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lt;신설 2018. 5. 28., 2022. 1. 5.&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8. 5. 28.&gt;</p>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 10. 4., 2007. 4. 11., 2011. 7. 28., 2012. 2. 1., 2013. 3. 22., 2019. 12. 10., 2020. 5. 26., 2021. 1. 5.&gt;</p> <p>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p> <p>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p> <p>2. 삭제 &lt;2021. 1. 5.&gt;</p> <p>3. 삭제 &lt;2021. 1. 5.&gt;</p> <p>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p> <p>5. 제19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p> <p>6. 삭제 &lt;2021. 1. 5.&gt;</p> <p>7. 삭제 &lt;2021. 1. 5.&gt;</p> <p>8. 삭제 &lt;2021. 1. 5.&gt;</p> <p>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p> <p>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p> <p>10. 삭제 &lt;2021. 1. 5.&gt;</p> <p>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p> <p>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p> <p>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p> <p>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u>② 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 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으 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lt;신설 2021. 1. 5.&gt; [제목개정 2021. 1. 5.]</u></p> <p>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 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p>	<p>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18. 5. 21.&gt;</p> <p>1. 삭제 &lt;2013. 9. 23.&gt;</p> <p>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p> <p>3.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p> <p>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p> <p>[제목개정 2022. 1. 6.]</p> <p>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 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lt;개정 2022. 1. 6.&gt;</p> <p>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p> <p>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p> <p>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p> <p>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p>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제24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7. 5. 17.,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gt;</p> <p>②제1항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 5. 17., 2020. 5. 26., 2021. 1. 5.&gt;</p> <p>[제목개정 2021. 1. 5.]</p>	<p>시설의 설치사업</p> <p>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p> <p>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lt;신설 2007. 11. 15.&gt;</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11. 15.&gt;</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1. 15.&gt;</p> <p>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li> <li>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li> </ol> <p>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11. 15.&gt;</p> <p>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p>	<p>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li> <li>5. 사업추진 일정</li> <li>6. 소요 사업비</li> <li>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li> </ol> <p>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t;신설 2007. 11. 16., 2022. 1.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li> <li>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lt;개정 2007. 11. 16., 2013. 9. 23., 2022. 1. 5.&gt;</p> <p>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07. 11. 16., 2018. 5. 28., 2022. 1.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li> <li>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ol>

자연환경보전법('21.1.5, '21.4.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2.1.6)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22.1.5)
	<p>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lt;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2022. 1. 6.&gt;</p> <p>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p> <p>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p> <p>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1. 15., 2013. 9. 23.&gt;</p> <p>[제목개정 2022. 1. 6.]</p>	<p>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p> <p>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p> <p>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p> <p>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07. 11. 16., 2022. 1. 5.&gt;</p> <p>[제목개정 2022. 1. 5.]</p>
<p>부칙 &lt;제17846호, 2021. 1. 5.&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lt;제18031호, 2021. 4. 13.&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p>	<p>부칙 &lt;제32327호, 2022. 1. 6.&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공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비율 상향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lt;제966호, 2022. 1. 5.&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가 반영되어 부과·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18. 5. 29 시행)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b>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b></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li>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li> <li>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li> <li>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li> <li>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ol>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lt;신설 2013.9.23.&gt;</p> <p>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10.12.28., 2013.9.23.&gt;</p> <p>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lt;개정 2007.4.4., 2007.11.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li> <li>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li> <li>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9.12.14.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li> <li>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li> </ol> <p>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lt;개정</p>	<p>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lt;개정 2014. 12. 9., 2018. 5. 21.&gt;          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lt;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8. 5. 21.&gt;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gt;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7.11.15.&gt;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2와 같다.</p>	<p>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lt;개정 2018. 5. 28.&gt;          1. 1억원 이하 : 2회 이하          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3회 이하          2. 2억원 초과 : 4회 이하          ②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2009.6.30&gt;</p> <p>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결과의 기록 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2013.3.22&gt;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lt;개정 2011.7.21&gt;</p>	<p>[전문개정 2018. 5. 21.] 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p>	<p>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5. 28.&gt; [본조신설 2013. 9. 23.] [제목개정 2018. 5. 28.]</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사·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 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p> <p>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5. 21.]</p>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13.9.23.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li> <li>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li> </ol> <p>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9.23. &gt;</p> <p>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li> </ol>	<p>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9. 27., 2007. 11. 16., 2008. 12. 31., 2012. 7. 20., 2013. 9. 23., 2018. 5. 28.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확정한 날</li> <li>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li> <li>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li> <li>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같은 법 제45조에</li> </ol>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lt;개정 2013.3.22&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li> <li>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li> <li>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li> <li>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li> <li>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li> <li>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li> <li>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li> <li>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li> <li>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li> <li>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li> <li>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li> <li>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li> <li>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li> </ol>		<p>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p> <p>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8. 5. 28.&gt;</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8. 5. 28.&gt;</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7.5.17, 2013.3.22&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5.17&gt;</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18. 5. 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3. 9. 23.&gt;</li> <li>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li> <li>3.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li> <li>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li> </ol> <p>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li> <li>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li> <li>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li> <li>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li> <li>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li> </ol> <p>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lt;신설 2007.11.15. &gt;</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 &gt;</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11. 16., 2018. 5.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li> <li>5. 사업추진 일정</li> <li>6. 소요 사업비</li> <li>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li> </ol> <p>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li> <li>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부칙 &lt;제15100호, 2017. 11. 28.&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제6항, 제59조제3항·제5항 및 제59조의2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7.11.15. &gt;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gt;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gt;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gt;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7.11. 15., 2013.9.23. &gt;</p> <p>부칙 &lt;제28896호, 2018. 5. 21.&gt;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6., 2013.9.23&gt;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11. 16., 2018. 5. 28.&gt;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07.11.16&gt;</p> <p>부칙 &lt;제760호, 2018. 5. 2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8.5.21)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8.5.28)
<p>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p>		<p>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17. 11. 28시행)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b>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b></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li>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li> <li>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li> <li>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li> <li>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ol>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lt;신설 2013.9.23.&gt;</p> <p>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10.12.28., 2013.9.23.&gt;</p> <p>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lt;개정 2007.4.4., 2007.11.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li> <li>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li> <li>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9.12.14.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li> <li>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li> </ol> <p>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lt;개정 2014.12.9.&gt;</p> <p>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lt;개정</p>	<p>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lt;개정 2009.12.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담·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li> <li>2. 녹지지역 : 2</li> <li>3. 생산관리지역 : 2.5</li> <li>4. 농림지역 : 3</li> <li>5. 보전관리지역 : 3.5</li> <li>6. 자연환경보전지역 : 4</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gt;</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7.11.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li> <li>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li> </ol>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법제4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기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lt;개정 2012.1.25. &gt;</p>	<p>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억원 이하 : 2회 이하</li> <li>2. 2억원 초과 : 3회 이하</li> </ol> <p>②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2009.6.30&gt;</p> <p>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2013.3.22&gt;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lt;개정 2011.7.21&gt;</p>	<p>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li> <li>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li> <li>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13.9.23.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li> <li>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li> </ol> <p>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도</p>	<p>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li> <li>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현황 보고) 사·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3]</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 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p> <p>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p>	<p>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9.23. &gt;</p> <p>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li> </ol> <p>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li> </ol>	<p>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9. 27, 2007.11. 16, 2008.12.31, 2012.7.20, 2013.9.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확정할 날</li> <li>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li> <li>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li> <li>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lt;개정 2013.3.22&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li> <li>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li> <li>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li> <li>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li> <li>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li> <li>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li> <li>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li> <li>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li> <li>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li> <li>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li> <li>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li> <li>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li> <li>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li> <li>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ol> <p>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07.11.15., 2013.9.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3.9.23.&gt;</li> <li>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li> <li>3.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li> <li>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li> </ol> <p>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p>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아 대체지역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7.5.17, 2013.3.22&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5.17&gt;</p>	<p>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li> <li>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li> <li>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li> <li>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li> <li>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li> </ol> <p>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lt;신설 2007.11.15. &gt;</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 &gt;</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7.11.15. &gt;</p> <p>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가 완료된 후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7.11.15. , 2012.10.29. &gt;</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 영 제46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li> <li>5. 사업추진 일정</li> <li>6. 소요 사업비</li> </ol> <p>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li> <li>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6., 2013.9.23&gt;</p> <p>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서 사본</li> <li>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ol>

자연환경보전법('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제6항, 제59조제3항·제5항 및 제59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p>	<p>1.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 집행된 경우일 것</p> <p>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p> <p>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gt;</p> <p>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 당시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2007.11.15., 2012.10.29.&gt;</p> <p>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7.11.15., 2013.9.23.&gt;</p> <p>부칙 &lt;대통령령 제24762호, 2013.9.23.&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p> <p>②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부칙 &lt;대통령령 제25837호, 2014.12.9.&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p>	<p>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p> <p>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p> <p>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07.11.16&gt;</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13. 9. 23시행)

자연환경보전법('13.9.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b>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b></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p>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p> <p>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p> <p>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lt;신설 2013.9.23.&gt;</p> <p>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10.12.28., 2013.9.23.&gt;</p> <p>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lt;개정 2007.4.4. , 2007.11.15.&gt;</p> <p>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p> <p>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p> <p>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9.12.14. &gt;</p> <p>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p> <p>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p> <p>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lt;개정 2014.12.9.&gt;</p> <p>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13.9.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2&gt;</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p>	<p>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lt;개정 2009.12.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li> <li>2. 녹지지역 : 2</li> <li>3. 생산관리지역 : 2.5</li> <li>4. 농림지역 : 3</li> <li>5. 보전관리지역 : 3.5</li> <li>6. 자연환경보전지역 : 4</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gt;</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07.11.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li> <li>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li> <li>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li> </ol>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법제4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기목부터 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lt;개정 2012.1.25. &gt;</p>	<p>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억원 이하 : 2회 이하</li> <li>2. 2억원 초과 : 3회 이하</li> </ol> <p>②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가 민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납부금의 1차 납부기한까지 인·허가 받은 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때에 1차 분할납부금액을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2009.6.30&gt;</p> <p>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자연환경보전법('13.9.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lt;개정 2011.7.21&gt;</p>	<p>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li> <li>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li> <li>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13.9.23.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li> <li>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li> </ol> <p>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도</p>	<p>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li> <li>2. 해당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현황 보고) 사·도시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3]</p>

자연환경보전법('13.9.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사·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p> <p>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lt;개정 2013.3.22&gt;</p>	<p>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9.23. &gt;</p> <p>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li> </ol>	<p>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사·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9. 27, 2007.11. 16, 2008.12.31, 2012.7.20, 2013.9.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확정한 날</li> <li>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li> <li>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li> <li>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p>

자연환경보전법('13.9.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li> <li>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li> <li>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li> <li>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li> <li>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li> <li>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li> <li>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li> <li>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li> <li>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li> <li>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li> <li>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li> <li>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유지·관리</li> <li>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li> <li>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ol> <p>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07.11.15., 2013.9.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3.9.23.&gt;</li> <li>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li> <li>3.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li> <li>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li> </ol> <p>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li> </ol>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13.9.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7.5.17, 2013.3.22&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5.17&gt;</p>	<p>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p> <p>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p> <p>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p> <p>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p> <p>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lt;신설 2007.11.15. &gt;</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 &gt;</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7.11.15. &gt;</p> <p>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가 완료된 후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7.11.15. , 2012.10.29.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 집행된 경우일 것</li> <li>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li> </ol>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li> <li>5. 사업추진 일정</li> <li>6. 소요 사업비</li> </ol> <p>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li> <li>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6., 2013.9.23&gt;</p> <p>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승인서 사본</li> <li>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li> <li>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li> </ol>

자연환경보전법('13.9.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14.3.24)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13.9.23)
	<p>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15.&gt;</p> <p>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 당시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2007.11.15. , 2012.10.29. &gt;</p> <p>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7.11. 15., 2013.9.23. &gt;</p>	<p>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07.11.16&gt;</p>
부 칙	부칙 <대통령령 제24762호, 2013.9.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65조, 제6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환경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7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사업(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07. 11. 18 시행)

자연환경보전법('07.5.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7.11.18)
<p>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09.1.1 개정)</li> <li>2. 광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li> <li>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li> <li>4.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ol>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 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광계획을 인가 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광·채굴사업을 말한다.</p> <p>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li> <li>2. 식물이 균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li> <li>3.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살·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li> <li>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li> </ol> <p>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p> <p>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p>	

자연환경보전법('07.5.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7.11.18)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p> <p>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p> <p>2. 녹지지역 : 2</p> <p>3. 생산관리지역 : 2.5</p> <p>4. 농림지역 : 3</p> <p>5. 보전관리지역 : 3.5</p> <p>6. 자연환경보전지역 : 4</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p> <p>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p> <p>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p> <p>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p>	<p>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p> <p>1. 2억원 이하: 2회 이하</p> <p>2. 2억원 초과: 3회 이하</p> <p>②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07.5.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7.11.18)
<p>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p>	<p>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 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p>	<p>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 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li> <li>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자연환경보전법('07.5.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7.11.18)
<p>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p> <p>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li> <li>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li> <li>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li> <li>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li> <li>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li> <li>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li> <li>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li> <li>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li> <li>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li> </ol>	<p>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li> </ol>	<p>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09.1.1개정)</li> <li>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때</li> <li>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p>

자연환경보전법('07.5.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7.11.18)
<p>이용시설의 설치·운영</p> <p>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p> <p>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p> <p>12.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 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li> <li>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li> <li>3.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 연구사업</li> <li>4.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름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li> </ol> <p>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li> <li>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li> <li>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li> <li>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li> <li>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li> </ol> <p>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li> <li>5. 사업추진 일정</li> <li>6. 소요 사업비</li> </ol> <p>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대행 동의서</li> <li>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p>

자연환경보전법('07.5.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7.11.18)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p>	<p>하여야 한다.</p> <p>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천탐광 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 사업승인서 사본</li> <li>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li> <li>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li> </ol> <p>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p>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06. 1. 1 시행)

자연환경보전법('04.12.3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5.12.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5.12.30)
<p>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li> <li>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li> <li>3.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ol>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기목의 규정에 의한 바다바닷가중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의</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p> <p>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①법 제4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li> <li>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li> <li>3.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li> <li>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li> </ol> <p>제3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p> <p>②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li> <li>2. 녹지지역 : 2</li> <li>3. 생산관리지역 : 2.5</li> </ol>	

자연환경보전법('04.12.3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5.12.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5.12.30)
<p>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p>	<p>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p> <p>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li> <li>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li> <li>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 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p>	<p>제2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p> <p>①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억원 이하 : 3회 이하</li> <li>2. 4억5천만원 이하 : 6회 이하</li> <li>3. 7억원 이하 : 9회 이하</li> <li>4. 10억원 이하 : 12회 이하</li> </ol> <p>②시·도지사는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31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3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부과·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제3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04.12.3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5.12.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5.12.30)
<p>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p>	<p>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p> <p>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li> </ol>	<p>제3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li> <li>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 ①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시점</li> <li>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 :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p>

자연환경보전법('04.12.3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5.12.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5.12.30)
<p>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각각 해양습지 및 해양자연환경의 보전 사업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li> <li>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li> <li>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li> <li>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li> <li>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li> <li>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li> <li>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li> <li>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의 이행</li> <li>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li> <li>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li> <li>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li> <li>12.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ol> <p>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 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 운동의 추진사업</li> <li>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li> </ol> <p>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li> <li>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li> <li>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li> <li>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li> <li>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li> </ol> <p>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p>	<p>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li> <li>5. 사업추진 일정</li> <li>6. 소요 사업비</li> </ol>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자연환경보전법('04.12.3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5.12.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5.12.30)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p> <p>제4조(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p>	<p>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⑦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p> <p>⑧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p> <p>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p> <p>②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li> <li>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li> <li>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li> </ol> <p>④영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자연환경보전법('04.12.3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05.12.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05.12.30)
<p>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p> <p>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外國人土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環境犯罪의團束에 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01. 10. 8 시행)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49條(生態系保全協力金)①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전하고 自然資産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自然環境 또는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生物多樣性의 감소를 초래하는 開發事業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を 賦課·徵收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の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은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環境·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li> <li>2. 鑛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노천탐광·채굴</li> <li>3. 기타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自然資産을 이용하는 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li> </ol> <p>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5억원의 범위내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生態系保全協力金を 감면할 수 있다.&lt;改正 '01. 4. 7 法律 第6469號&gt;</p> <p>④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の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바다·바닷가중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다.&lt;改正, '02.12.26 法律 第6830號&gt;</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p> <p>제4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법 제49조 제3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면적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li> <li>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li> <li>3.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li> </ol> <p>②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li> <li>2. 제1호 외의 토지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li> </ol> <p>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p> <p>②법 제49조제3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지역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연천·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li> <li>2. 녹지지역 : 2</li> <li>3. 생산관리지역 : 2.5</li> <li>4. 농림지역 : 3</li> <li>5. 보전관리지역 : 3.5</li> </ol>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6. 자연환경보전지역 : 4</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다만, 군인 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을 제외한다.</p> <p>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li> <li>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li> <li>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 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신청) ①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p>	<p>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영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결과의 기록 관리)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4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 통지)영 제50조제2항,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영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⑥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生態系保全協力金 또는 加算金の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加算金の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生態系保全協力金の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lt;改正 '01. 4. 7 法律 第6469號&gt;</p> <p>⑦환경부장관은 生態系保全協力金を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生態系保全協力金の 일부를 돌려 줄 수 있다 &lt;改正 '01. 4. 7 法律 第6469號&gt;</p> <p>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生態系保全協力金の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改正 '01. 4. 7 法律 第6469號&gt;</p>	<p>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2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법 제4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p> <p>제52조의3(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①법 제49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조성사업</li> <li>2.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생태계 조성사업</li> <li>3.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자연 조성사업</li> <li>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li> <li>5.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li> </ol> <p>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li> <li>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4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①영 제5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li> <li>2. 사업내용</li> <li>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li> <li>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li> <li>5. 사업추진 일정</li> <li>6. 소요 사업비</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 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영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li> </ol>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50條(事業 認許可등의 通告)①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の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의 認許可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그날부터 20日이내에 事業者·事業內容, 事業의  규모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lt;改正 '01. 4. 7 法律 第6469號&gt;</p> <p>②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の  부과 金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事業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p> <p>第51條(生態系保全協力金の 強制徵收) ①環境部長官은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を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日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生態系保全協力金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기한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과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依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第52條(生態系保全協力金の  用度)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제49조제6항의  規定에  依하여   교부된  金額은  다음  각호의  用도에  使用하여야  한다.  다만,  公有水面管理法  제2조의  規定에  依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事業에서   조성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이를  습지  및  해양자연  環境의  保全事業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lt;改正 '01. 4. 7 法律 第6469號&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生態系  및  生物種의  保全事業</li> <li>2.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원</li> <li>3.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生物多様性管理要綱의  이행</li> <li>4.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保全地域管理  基本計劃의  施行</li> <li>5.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生態系  保全을  위한</li> </ol>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li> <li>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li> </ol> <p>④ 영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p> <p>제47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通告)①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li> <li>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노천탐광·채굴 :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土地등의 확보                      6.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등의 土地등의 買收                      7.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施設의  설치 지원                      8.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 保全                      9.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生態系의 復元                      10.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外來動· 植物을 제거하기 위한 技術· 藥品의  개발  技術의  研究  等                      11.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 利用施設의  설치·  운영                      1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觀光의  육성                      13.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사용                      14.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                      15.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自然環境  保全團體의   육성                      1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事業</p> <p>第61條(權限의 위임 및 위탁)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地方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p> <p>附 則 ('01. 4. 7)</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第49조·제50조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02. 12.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5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기타용도 기준)환경부  장관은 법 제5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  운동의 추진사업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및 보전 사업</p> <p>제 57조(권한의 위임)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1. ~ 2. (생 략)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부과·징수                      4. (생 략)                      ② ~ ③ (생 략)</p> <p>부 칙 ('01. 9. 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내지 제50조·제52조 및 제52조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02. 12. 31)</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의 지역계수 적용에 관한 특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관리지역이 계획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될 때까지의 그 관리지역의 지역  계수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관리지역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인 경우에는 1 또는 0(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임야·연천·하천·유지 및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을, 준농림지역인 경우에는 2를 적용한다.</p>	<p>부 칙 ('01. 10. 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01. 1. 1 시행)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49條(生態系保全協力金) ①環境部長官은 自然環境을 體系的으로 보전하고 自然資産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自然環境 또는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生物多樣性的 減소를 초래하는 開發事業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を 賦課·徵收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の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은 다음 各號와 같다.</p> <p>1. 環境影響評價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p> <p>2. 鑛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노천탐광채굴</p> <p>3. 기타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自然資産을 이용하는 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해당 區域 또는 團地의 總事業費의 1千分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賦課한다. 이 경우 國防目的의 事業,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의 事業, 公익상 중요한 事業, 零細民을 위한 事業, 産業團地開發事業, 農漁村整備事業, 農工團地造成事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生態系保全協力金を 減免할 수 있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の 徵收節次·減免基準, 總事業費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 및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p> <p>제47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의 1천억원까지는 1천분의 1.5를, 1천억원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1을 말하며, 그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대상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으로 결정한다.</p> <p>1.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p> <p>2.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림전용 부담금</p> <p>3.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산림형질변경복구비용</p> <p>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대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48조(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4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p>	<p>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비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li> <li>2. 설계비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대가의 기준에 의한다.</li> <li>3. 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을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li> <li>4. 토지매입비 :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기 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을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가에 의한다)를 말한다.</li> </ol> <p>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①법 제4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 국방목적의 사업</li> <li>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li> <li>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건설사업</li> <li>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li> <li>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li> <li>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li> <li>7. 고속국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고속국도건설사업</li> <li>8.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li> <li>9.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 상수도의 취수원인 댐건설사업</li> <li>10.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시설의 설치사업</li> </ol> <p>②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을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li> <li>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안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li> </ol>	<p>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시설의 건설사업</p> <p>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p> <p>5.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p> <p>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면양이 실시하는 항만공사</p> <p>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건설사업</p> <p>③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p> <p>1.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설물,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p> <p>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p> <p>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p> <p>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사업</p> <p>5.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의 병원시설 설치사업</p> <p>6.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건설사업</p> <p>7.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p> <p>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p> <p>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p> <p>10.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p> <p>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p> <p>12.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병원시설 설치사업</p> <p>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p>	<p>제4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 통지) 영 제50조제2항,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p>

〈참고 1〉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규정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50條(事業 認許可등의 通告) ①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の 賦課對象이 되는 事業의 認許可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그날부터 20日이내에 事業者·事業內容, 事業의  규모 및 總事業費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通告하여야 한다.</p> <p>②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の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事業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告의 內容·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p> <p>第51條(生態系保全協力金の 強制徵收) ①環 部長官은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生態系保全協力金を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日이상의 기간을</p>	<p>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 의무자가 잘못된 경우</p> <p>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p> <p>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를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신청) ①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5호서식에 의한다.</p> <p>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p> <p>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협력금을 환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설계서 등 비용산출증빙서류</p> <p>2. 용역 및 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서 사본(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p> <p>3. 기타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47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通告)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通告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다.</p>

法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정하여 이를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生態系保全 協力金에 대하여는 100分の 5에 상당하는 加算金を 賦課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기한내에 生態系保全協力金과 加算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第52條(生態系保全協力金の 用度) 環境部長官은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協力金を 다음 各號의 用도에 사용하되, 地方自治團體에 100分の 50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公有水面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바다와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事業에서 조성된 生態系保全協力金은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 이를 濕地 및 海洋自然環境의 保全事業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lt;改正 99·2·8 法59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生態系 및 生物種의 保全事業</li> <li>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의 지원</li> <li>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生物多樣性管理의 이행</li> <li>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管理基本計劃의 施行</li> <li>5.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 보전을 위한 土地등의 확보</li> <li>6.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保全地域등의 土地등의 買收</li> <li>7.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施設의 설치 지원</li> <li>8.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留保地域의 生態系 보전</li> <li>9.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汚染物除去 生態系의 復元</li> <li>10.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外來動· 植物을 제거하기 위한 技術製品의 개발 技術의 研究 등</li> <li>11.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 利用施設의 설치· 운영</li> <li>1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生態觀光의 육성</li> <li>13.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사용</li> <li>14.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li> <li>15.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自然環境保全團體의 육성</li> <li>1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事業</li> </ol> <p>第61條(權限의 위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地方 海洋水産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5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기타용도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 운동의 추진사업</li> <li>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및 보전사업</li> </ol> <p>제5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6. (생 략)</li> <li>1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의 부과·징수(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한다)</li> </ol>	

#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21-206호, 2021.10.21. 제정)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납부대행기관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주)광주은행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KB국민카드(주)	
	(주)농협은행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주)한국씨티은행	
	현대카드(주)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59호, 2022.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도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 등의 확정) ① 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

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确定的한 시·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67호, 2013.12.2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95호, 2018.11.26.>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59호, 2022.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금 감액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 징수율을 확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별 표]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징수율별 교부금액 산정방법
1. 기본징수율 초과 징수	▪ 10% 이상 초과 : {징수액 × (0.5 + 0.1)} - 감액금
	▪ 10% 미만 초과 : {징수액 × (0.5 + 초과 징수율)} - 감액금
2. 기본징수율 범위내 징수	▪ {징수액 × 0.5} - 감액금
3. 기본징수율 미달 징수	▪ 10% 이상 미달 : {징수액 × (0.5 - 0.1)} - 감액금
	▪ 10% 미만 미달 : {징수액 × (0.5 - 미달 징수율)} - 감액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195호, 2018.11.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시·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의 확정) 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 신청한 금액중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시·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67호, 2013.12.2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95호, 2018.11.26.>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별 표]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징수율별 교부금액 산정방법
1. 기본징수율 초과 징수	- 10% 이상 초과 : 징수액 × (0.5 + 0.1)
	- 10% 미만 초과 : 징수액 × (0.5 + 초과 징수율)
2. 기본징수율 범위내 징수	- 징수액 × 0.5
3. 기본징수율 미달 징수	- 10% 이상 미달 : 징수액 × (0.5 - 0.1)
	- 10% 미만 미달 : 징수액 × (0.5 - 미달 징수율)

##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167호, 2013.12.2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시·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의 확정) 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시·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167호, 2013.12.2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별 표]**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징수율별 교부금액 산정방법
1. 기본징수율 초과 징수	- 10% 이상 초과 : 징수액 × (0.5 + 0.1)
	- 10% 미만 초과 : 징수액 × (0.5 + 초과 징수율)
2. 기본징수율 범위내 징수	- 징수액 × 0.5
3. 기본징수율 미달 징수	- 10% 이상 미달 : 징수액 × (0.5 - 0.1)
	- 10% 미만 미달 : 징수액 × (0.5 - 미달 징수율)



〈참고 2〉

## 생태계보전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 I.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 〈총괄〉

### □ 질의(1)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인지 아니면 평가대상지역 내 개발허가를 득한 지역인지 여부와 생태계 보전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협의된 대상사업지역 전체를 의미함
  - 단, 사업추진상의 편의를 위해 단계별로 일정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단계별 허가 또는 승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됨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가 영향평가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권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질의(2)

• 개발허가를 득하여 기 개발된 산림훼손지역이 추후 개발지역의 확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면 기 허가 지역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을 사업자가 기 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지역의 확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됨
  - 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할지라도 2001.1.1 이전에 인·허가 등의 처분이 완료된 사업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 질의(3)

•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평가대상 규모이었으나,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가 인·허가시 그 규모 미만으로 인·허가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개발사업 인·허가권자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 이하로 인·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로 구분됨
  - 사업규모의 축소 등 전체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영향평가협의 철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 ⇒ 동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
  - 전체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 ⇒ 사업의 내용, 사업비의 확보정도 등 사업추진의 편의상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단계별 사업 인·허가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 □ 질의(4)

• '97.7월에 평가협의를 완료하고 비관리청 민자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일이 '03년도에 있는 경우 부과대상인지?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시점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시점이므로, 2001.1.1 이후에 동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동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질의(5)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나 협의 없이 '06년 사업승인을 받아 일부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 중지 상태에서 '09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신청 및 협의를 득한 경우 기존 승인면적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m^2$ 이상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은'07.11.18부터 시행된 사항으로서, '07.11.18 이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은 개발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됨(단, '07.11.18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신청하여 동 시기 이후에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제외)
- 상기 사업은 '09년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신청하여 협의를 득한 사업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검토된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 산정되어야 함

□ 질의(6)

• 유원지로 지정된 곳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인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지역계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허가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를 말함). 따라서 위 사업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고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유원지이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는 변경 전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질의(7)

• 댐 건설 공사 중 06년 4월 총 훼손면적 1,537,624 $m^2$ 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상한액인 1,000백만원 부과·징수  
 • 최근 댐 수몰지 면적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고, 편입된 면적은 06년 4월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납부된 필지  
 • 댐 수몰지와 도로의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이행한 경우 도로에 편입된 수몰지 면적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여부

-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 200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시 훼손면적으로 산정되어 생태계 훼손이 이미 이루어 졌다면 다시 부과하기는 어려움
- 다만, 200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시 훼손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거나 훼손면적으로 산정되어 기 생태계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8)

• 개발행위(토석채취)를 준공한 지역('04.10월, 9100 $m^2$ )을 포함하여 추가로 토석채취 인·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부담금 납부대상에 기 준공면적이 포함되는지?  
 • '04년 10월 토석채취 준공 시 사용한 진입도로를 사용할 경우 부담금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인·허가 지역에 무허가 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07.11월 신설되었으므로 '04.10월 이미 개발행위가 준공된 면적 9,100 $m^2$ 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추가로 인·허가 받는 지역은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됨. 또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도로, 대지 및 공장용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나, 무허가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은 훼손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가 훼손면적이 제외됨을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 도면, 지적도, 사진 등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 질의(9)

- 동일사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나로 실시하고 사업을 별도로 시행할 경우 이를 각각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통합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등임. 따라서 동일사업자가 연접지역에서 사업시기가 일치하여 하나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경우라면 별개의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상이하고 사업주체도 다른 경우라면 연접지역이라도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 질의(10)

- 개별사업자가 승인기관에 인허가 신청은 개별(3개사, 면적 15,000 ~20,000㎡)로 신청하고,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만 통합하여 협의를 득한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통보하는 인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각각 3만㎡ 미만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신청한 3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편의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공동으로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 □ 질의(11)

- 두 명의 토지소유자(A토지소유자: 28,480㎡, B토지소유자: 9,228㎡)가 연대하여 단일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개간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지?
-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연대하여 단일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단일 건으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였다면 동 인허가를 받은 전체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즉, 인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다수의 소유자별 지분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 □ 질의(12)

- 00사업지구의 사업면적 10km<sup>2</sup>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3단계로 나누어 사업추진 중으로 1단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을 득한 후 생태계보전부담금 한도금액 납부완료
- 2단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인 바, 2단계 실시계획 승인 시 생태계보전부담금 추가 납부 대상 여부
- 2단계 사업추진시 1단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적 증가에 따른 재협의로 추진시 1단계 사업에 대한 연장으로 보고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해당 사업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므로, 사업여건상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구분하여 추진시에는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면적 중 생태계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게 됨
  - 따라서 1단계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상한액)여부와 관계없이 2단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시 2단계 사업면적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규정의 개정(2013.9.23 시행)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산정·부과하고 있음

□ 질의(13)

- 08년 환경영향평가지 매립지역으로 지변이 없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로 지변을 발급되었음
- 동 지역에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일 경우 대상지역의 지목이 “공장용지”이므로 산정금액은 0원이 되는 것 인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매립부지에 유류저장시설 등 시설설치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로서, 매립 후 결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목(공장용지 등)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14)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개발면적에 연접개발을 포함하는 근거 규정은?
- 또한, A가 10,000㎡, B가 10,000㎡, C가 10,000㎡를 개별적으로 개발할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괄 부과하는지? 각각 부과하는지? 일괄 부과시 본인이 개발하지 않은 면적도 부과금을 내야 하는지?

○ 개발면적에 연접개발을 포함하는 근거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에서 정의하고 있음  
 ○ A,B,C 각각의 사업면적의 합이 30,000㎡를 초과하여 1건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사업의 인허가권자가 통보하는 인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15)

- 공군부대 부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 받음
  - 군부대는 2중 울타리로 구획되어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된 사항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데,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의 단서조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목적의 사업 중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은 동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면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16)

- 기 공원 조성 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사업이었으나 야구장 조성을 추가하는 금번 확장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공원시설면적 누적합계 10만㎡ 이상)를 협의완료한 동 사업장의 경우,
  - 질의1 : 기 조성시설(준공) 면적과 금번 확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전체가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 “질의1”에 대한 답변이 만약 합산된 면적전체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면,
    -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외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지 여부
    - 상기 지목 외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3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설치 완료된 시설물의 토지 면적도 제외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을 훼손면적 산정시 제외가 가능하다면 “시설물의 범위”에 건축물대장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과 각종 운동시설의 토지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기 허가를 득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지역의 확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면적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다만,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시행('01.1.1) 이전에 인·허가가 완료된 경우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질의2~3: 확장되는 사업부지 내에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태적 기반이 이미 훼손된 토지로 보아 생태계훼손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질의(17)

- 인가 자연휴양림 면적이 543,400㎡이고, 조성계획 허가 구역 면적도 543,400㎡이며, 시설(개발)면적이 30,000㎡이내 일 때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4호의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이라 함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면적을 의미(실제로 개발(훼손)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허가면적이 543,000㎡인 경우라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부과됨

□ 질의(18)

- 03년 이후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25건의 새로운 인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으나, 부담금 납부에 고지를 받은 적이 없음  
-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안내를 받은바, 이럴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언제부터 소급 적용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권리로 볼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시효를 5년으로 보아서 최근 5년간 허가된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 질의(19)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12년)’에 따라 기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중(추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 사업대상지는 2014년 투기가 완료될 예정으로 준설토 투기장 호안 외에는 지목이 없으며, 용도지역 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 당초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금회 항만재개발 시에도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 납부 대상에 해당될 경우, 금회 사업대상지의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당초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동일 대상지에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한다면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대상지 내의 호안 등 기존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 중 형질변경 등 훼손이 수반되는 면적은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 질의(20)

• A, B, C의 사업지가 접하여 있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받은 후 인·허가를 각각 받은 경우로서 A와 C가 동일한 사업자라면 3만㎡미만인 A사업지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 (사업면적) A : 23,539㎡, B : 30,081㎡, C : 58,550㎡

- 질의한 3개 사업은 계획관리지역내 10,000㎡ 이상으로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A와 C사업은 동일한 사업자로서 동일한 지역에 연접하고 있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A와 C의 사업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 질의(21)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사업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가 생략되는 경우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건축허가 등 실시계획 인허가 단계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포함하는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3만㎡ 이상)이나, 같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3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개발기본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대상사업으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대상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절차가 생략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수립만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 질의(22)

• A사가 2012년 공장설립 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협의를 득하고 공장설립 승인(29,000㎡)을 받은 후 B사가 2014년 A사 공장부지(29,000㎡)를 인수하고 2018년 연접부지에 공장설립을 추진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7,000㎡)를 받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 B사에서 A사 공장부지(29,000㎡)를 인수한 후 연접부지에 추가로 공장을 설립(증설, 27,000㎡)하고자 하는 것으로, B사는 당초 A사에서 받은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승계한 것이므로, 기존 공장부지와 금번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질의(23)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42,79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임직원 중 1인)가 2개 구역으로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위한 동일사업자의 기준은?(다만, 각각의 허가면적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3만㎡) 미만임)

○ 동일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의2 가호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택지개발사업 관련〉

□ 질의(24)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실시계획승인시('00.8월) 지자체시행사업으로 전액면제 대상이었던 사업이 '01.10.8 이후에 면적 증가로 인해 실시계획 변경승인('03.5월)을 받았을 경우 증가한 면적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여부?  
• '05.12월 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증발생으로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01.10.8 이후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도입(2001.1.1) 당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시점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본 사업이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인 '00.8은 동 제도 도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동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을 받은 '03.5월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므로 최초 승인('00.8)받은 개발면적에 추가하여 개발되는 면적은 부과대상에 해당됨  
- 또한, '00.8 최초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면적이 추후에 실질적인 사업면적의 변화가 없이 확정측량 결과 면적이 바뀐 경우라면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03.5 실시계획 변경승인에서 추가된 면적이 '05.12 확정측량에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라면 동 면적 증가가 사업지역의 경계선 변경 및 사업면적 확대가 없다 하더라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 질의(25)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대해서 부과대상 여부

○ 농경지는 콘크리트화된 지역과 달리 나름대로의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도 포함된 경지정리된 농경지라 할지라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되며 해당 농경지의 용도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산업단지 관련〉

□ 질의(26)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도입('01.1)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제2종 지구단위구역에서 면적을 추가하여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 부과대상 면적은?

○ '01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지역의 확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01.1.1 이전에 인·허가 등의 처분이 완료된 사업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질의(27)

- 지방산업단지 개발 추진 일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담금 부과면제(최초 실시계획승인일 98년)에 해당하는지?
  - 1995년 : 산업단지개발계획 지정 승인(60만평)
  - 1998년 : 실시계획 승인(최초) - 지정 변경 5회 및 실시계획 4회 변경, 사업부지 경계선 변동 없음
  - 2005년 :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60만평→60만평+15만평=75만평)
- 부과대상인 경우, 기존 단지와 확장 단지를 모두 포함한 면적을 부과하는지 확장단지에 한해서만 부과하는지?
- 부담금 부과시 개정 전 법규정(총사업비 기준)과 현행 법규정(훼손면적 기준) 중 어느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

- 상기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제도가 도입(2001.1.1)되기 이전인 1998년에 이미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기존사업(60만평)의 경우에는 동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 2001.1.1 동 제도 시행일 이후에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부지 경계선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장된 면적(15만평)이 동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2001.4.7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관계규정(생태계훼손 면적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사업지역의 지역계수(1~4)를 곱하여 산정)에 따라 부과함

□ 질의(28)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도입('01.1)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경우
  - '01년 이후에 공유수면 매립(8천㎡)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와 '01년 이후에 공유수면매립(64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한 경우 동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01년 이후 사업면적을 추가한 경우, 부담금 산정은 전체면적 기준인지 추가된 면적 기준으로 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시행 이전에 기 협의된 국가산업단지내의 보존지역이 2001.1.1이후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개발될 경우 개발지역이 동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도입(2001.1.1) 이전에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 제도도입 이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면적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되는 면적은 동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부과대상면적은 실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제도도입 이전 실시계획 승인당시 보전지역이 '01.1.1 이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토지이용계획이 개발 지역으로 바뀐 경우 추가로 훼손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 해당함

〈공원 관련〉

□ 질의(29)

-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면적 그대로 공원으로 계획하여 현재의 상태(전·답)보다 훨씬 가치 있는 생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공원계획시 일부 성토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성토를 하는 행위가 있다하여 공원면적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의 산정은 부과대상 사업지역에 대한 현재의 생태적 여건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원조성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부과대상에 해당함

## □ 질의(30)

- 근린공원 조성사업(공원조성 면적 : 70만㎡, 공원시설면적 : 57,256㎡) 추진 일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03. 8.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초안제출 당시 평가대상사업임)
  - '03.12.3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조성 면적 25만㎡→공원시설면적 10만㎡ : 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
  - '04. 2.3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04.6.24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
  - '05.2.11 : 실시계획 인가(공원 내 골프연습장) - 전체 면적 중 일부 인가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후 최초 인·허가 시점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일(‘04.6.24)”이나, 동 사업은 '03.12.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조성면적 25만㎡→공원시설면적 10만㎡)에 따라 부과기준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채석허가 관련〉

## □ 질의(31)

- 환경영향평가 후 사유림 내 채석허가를 받고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만약 납부대상이라면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설명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으로 훼손되는 자연생태계의 가치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므로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 예치와는 법적 설치근거 및 목적 등이 서로 달라 이중부과로 볼 수 없음

## □ 질의(32)

- 질의1 : '07. 11. 18 이전 48,240㎡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09월 5월 토석채취면적이 99,745㎡로 되었을 경우 증가면적(51,505㎡)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 질의2 : 사업 증가면적 51,505㎡중 훼손면적이 28,030㎡인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질의1: 사전환경성검토대상개발사업(개발면적 3만㎡이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 것은 '07.11.18 이후 임. 따라서 그 이전에 허가받은 면적(48,240㎡)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증가면적(51,505㎡)에 한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함
- 질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서 “개발면적 3만㎡이상”의 의미는 훼손면적이 아닌 개발사업 인·허가 면적을 말함. 따라서 훼손면적이 28,030㎡인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임

### 〈도로건설사업 관련〉

## □ 질의(33)

- '95.11 도로구역 결정이 완료되고 '01.1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사업으로 '02.11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04.12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참고 2〉 생태계보전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01.1.1이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 제도 시행일 이후 도로구역 결정(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 해당됨

### 〈골프장 관련〉

#### □ 질의(34)

• '95년 광업법에 의거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지역 중 일부를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02.5.15 용도지역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함

#### □ 질의(35)

• '00.4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6월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생태계보전부담금제도 도입(2001.1.1) 이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의(36)

• 2005년 11월 골프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사업승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동 사업지구내 포함된 골프장 조성사업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협의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동 골프장조성사업을 개별사업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골프장조성사업이 당초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내용에 포함되어 승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골프장 조성 면적을 포함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산정·부과된 경우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됨

## II. 부담금 부과시기 및 부과금액 관련

### 〈부과시기 및 부과상한액 관련〉

#### □ 질의(37)

•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에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통보 시점은“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이, 승인권자로부터 실시계획 등을 승인한 시점인지 아니면 승인 후 관보에 고시한 시점인지?

-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이라 함은 통상 부과대상사업 인·허가 등의 결정권자가 당해 사업의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는 달리 당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절차로 별도의 관보고시를 법적근거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시된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 질의(38)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승인 등이 택지개발계획승인(1차) 및 실시계획승인(2차)으로 2차(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시기는?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가 영향평가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특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시기가 해당 사업의 근거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근거법률인 경우에도 몇 차례의 규정개정으로 평가협의 시기의 변동이 있었음
- 따라서, 사업추진 당시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택지개발사업별 평가서 제출시기를 기준으로 부과시점이 되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승인일을 판단하여야 함

□ 질의(39)

• 사업자에게 통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훼손면적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 후 재산정요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과금 납부 전 사업자 요청시 수정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고지를 받은 자는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때 부과권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부과 내용이 잘못된 경우 부과권자는 납부전이라도 기 부과금액에 대한 정정부과 등을 하여야 함

□ 질의(40)

• 사업지구 전체면적에 대하여 여건상 사업을 단계별(1단계, 2단계)로 진행시키는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은?  
• 1단계 실시계획 승인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이 부과상한액(5억원)을 초과한 경우, 2단계 실시계획 승인시의 부담금 부과상한액이 변경(10억)되어도 2단계분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가 제외될 수 있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과 대상으로 하고, 해당 사업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므로 사업여건상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시에는 각 단계별 사업면적 중 생태계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동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함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상한액은 해당 부과대상사업 전체에 적용되므로 1단계 부과액이 부과기준일 당시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부과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나머지 면적(2단계분)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음

□ 질의(41)

• '06.1월 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득한 후 추가로 산업단지 외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사업면적 확대를 추진할 경우, 기 부과된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에 부과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추가개발 예정인 산업단지 외 사업면적을 포함하여 부과상한액(10억원) 적용이 가능한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부과하며, 동조제3항에 의거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연접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추진하는 경우 기 부과한 금액을 포함하여 부과상한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 질의(4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신청이나 승인절차가 없어 자연환경보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이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시점이 모호한 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해야하는 지?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도로건설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도로건설사업의 부담금 부과시점은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의 경우 공사시행의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도로관리청이 사업의 승인권자이면서 시행자인 경우에 도로사업 인·허가 등의 신청일자는 도로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기간에 최초로 협의 요청한 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질의(43)

-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사업의 규모·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 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통보기한(20일) 산정시 초일,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라 하고 있어 인·허가를 승인한 날(초일)은 포함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휴일·토요일은 처리기간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행정계획)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인허가 20일내 바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장인허가 및 토목공사(개발계획) 단계에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에 해당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됨에도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수립만으로 사업이 시행됨으로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질의회신 내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수립 이후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 단계가 있으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통보하면 될 것임

## 〈가산금 관련〉

### □ 질의(45)

- 생태계보전부담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금(100분의5)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경우, 감면대상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만 한정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국가사업도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대상에 포함됨

### □ 질의(46)

-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회계처리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 훼손에 대하여 다른 민간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일지라도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01.10.8 이후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제도 활용 및 기한 내 납부를 통하여 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분할납부 관련〉

### □ 질의(47)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제4항(분할납부)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고지할 수 있는지
  - 부과금액 : 5억 원(납부기한 2008.4.25)
  - 사업기간 : 2007.12 ~ 2009.12
  - 분할납부 신청: 1차(2008.4.25.까지) - 10,000,000원 / 2차(2009년 납부) : 490,000,000원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회차별 균등액으로 징수결정하도록 하고, 분납기간은 3년 이내이나 납부대상 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질의(48)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시 1회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간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90일도 줄 수 있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시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의거 부과일로부터 1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까지 5일전까지 서면통지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월을 초과하여 부과기한을 지정할 수 없음

## 〈환급 관련〉

### □ 질의(49)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 이후 사업은 유지하되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참고 2〉 생태계보전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자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며, 같은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권자는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납부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당초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 취소 없이(사업은 유지) 사업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 납부된 부담금은 동 인허가 받은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및 양도·양수 등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환급하지 않으며,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재산정 부과, 환급할 수 있을 것임

### Ⅲ. 부담금 훼손면적 관련

#### □ 질의(50)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시 지목상 제외되는 면적과 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은 훼손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며,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경우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도 시설물로 보아야 하는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라 함은 통상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함. 이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지역의 생태적 기반이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동 규정 시행일('01.10.8) 이전에 설치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 또는 담 보다 비교적 집약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 질의(51)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의 적용 사례로써, 대장면적 10,000㎡의 필지에 건축면적 100㎡의 가옥이 있다면 제외면적은 전체 필지면적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면적인 100㎡만 제외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당해 건축면적 100㎡의 가옥이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이미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 등의 경우라면 제외대상 면적은 건축면적(가옥면적)인 100㎡만 해당함

#### □ 질의(52)

- 1997.5 농공단지에 준공·가동 중인 공장부지(155,692㎡)의 확장(51,000㎡)을 위하여 2002.12.26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고, 2005.5.16 지구단위계획승인, 2005.6.3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지역이 1996~1998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기술연구소 등의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 농공단지에 편입을 추진 중인 지역이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도입(2001) 이전(1996~1998년)에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 설치 또는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부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함

□ 질의(53)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지 내의 토지 중 지하에 대형(1,600mm) 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부과제외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은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표면에 대한 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매설된 수도관로로 인하여 지표면에 식물 등이 서식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생태계를 훼손한 시설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질의(54)

• 동 시행령 동조 제2항(지적법에 따라 별도 규정한 지목 및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제외) 규정과 연계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시 지하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포함 여부는?

○ “지하시설물 설치 토지”의 경우 설치된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표 생태계 형성이 곤란한 경우라면 생태계 훼손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없음  
○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이라 함은 동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지목 이외에 이미 시설물이 설치되어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표 생태계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하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질의(55)

•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1960년대에 건축된 광산촌의 사택 및 도로, 텃밭으로 이용 중이나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동 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해당 지목의 경우에는 기 훼손면적으로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함  
○ 동 시행령 동조동항제2호의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으로는 동 규정 시행일인 2001.10.8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비닐하우스 제외)인 경우 동 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 가능하나,  
○ 그 이후에 설치된 무허가 시설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인 토지도 동 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질의(56)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와 관련, 적용기준일이 ‘01.10.8일이 되는 이유 및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도 시설물에 해당여부, 시설물 설치 기준일을 해당사업 인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훼손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목의 지목변경 시점도 고려대상인지?

○ 시설물 설치 토지를 생태계훼손면적에서 제외토록 함은 설치된 당해 시설물로 인해 생태계 형성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규정 시행일(2001.10.8)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며, 동 규정 시행일 이후 설치된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 적용이 곤란함  
○ 생태계 훼손면적 적용대상 시설물 해당 여부는 시설물의 규모 보다는 시설물의 성격에 따른 적용여부 판단이 중요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승인일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태계 훼손이 발생한 시설물의 준공시점을 기준함이 타당할 것임  
○ 또한, 훼손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목의 변경시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함

□ 질의(57)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지목 외에 묘지, 콘크리트구조물(맨홀)을 포함한 수도용지,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용지, 쓰레기나 건축자재 등이 쌓인 잡종지의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여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목으로써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제2호 규정에 따라 기존 훼손면적으로 보아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
- 다만, 시설물은 콘크리트구조물, 건축물 등 생태적 기반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비닐하우스 제외)로 무허가인 경우에는 동 제도 시행('01.10.8) 이전에 설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묘지 및 쓰레기나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곤란함

□ 질의(58)

•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 시행시 훼손이 적은 조성녹지, 완충녹지 등 녹지지역을 훼손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 제2조의 규정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계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녹지 지역의 지역계수는 2임
-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해도 녹지조성 면적이 훼손면적에서 제외 될 수는 없음, 다만 사업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원형보전지역은 훼손면적에서 제외됨

□ 질의(59)

• 골프장 건설부지중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시 복원녹지 및 원형보전녹지의 경우 훼손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골프장을 건설하여 관공서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동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 산정시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훼손되는 생태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훼손면적에 포함됨. 즉, 원형 훼손후 복원하는 복원녹지는 훼손면적에 포함되나, 원형이 보전 되는 원형보전녹지는 제외됨
- 또한, 골프장을 건설하여 관공서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도 생태계를 훼손하는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질의(60)

• 철도교량 설치시 기초부분만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교량의 슬라브는 지상 또는 공장에서 만들어 인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훼손면적 산정은 기초부분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슬라브면적 전체가 해당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훼손행위가 발생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교각이나 슬라브의 설치를 위하여 토양의 표토층에 변화를 주는 부분은 훼손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질의(61)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으로서 인허가를 부분적으로 받는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을 부분면적 기준으로 산정 하는지, 아니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바, 해당사업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산정하므로 사업여건상 단계별로 구분 하여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시에는 사업면적 중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생태계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동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함

## □ 질의(62)

- 육상(논)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생태계의 훼손 면적은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육상골재 채취시 훼손면적은 골재채취를 위하여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한 면적과 굴착한 면적 및 성토한 면적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함

## □ 질의(63)

- 사업개요 - 1차허가지역 : 81,413㎡, 1993. 8월 허가  
- 2차허가지역 : 78,566㎡, 1999. 7월 허가(1차부지중 : 8,974㎡포함)  
- 1차허가지역 복구 : 2004년, 2008년 : 72,439㎡ 복구  
- 환경영향평가 협의 : 151,005㎡(복구면적+2차허가), 2009. 12월 협의
-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범위는 채석장 신규면적 확장 없이 기허가지역(2차)에 대한 기간 연장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이미 수목 및 표토가 제거된 상태인데 대상지역을 훼손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채석이 완료된 산물처리장, 야적장, 부대시설을 제외한 채석부지만 훼손면적으로 산정해야하는지
- 채석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면적(표토층에서 약 50m이하까지 채석이 이루어진 부분)도 훼손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을 사업자가 기 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지역의 확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인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계보전부담금 적용대상임
- 그러나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도입시행이전인 2001.1.1 이전 인·허가를 득한 부분(1차허가)이 '09.12월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부분과 별개의 건으로써 그 자체로 완성된 인·허가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01.1.1 이전에 허가를 득한 지역(1차허가)이 '09.12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지역과 동일한 인·허가 건으로 볼 경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존 훼손면적으로 보아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
- 훼손면적의 산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식물이 균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훼손면적 산정대상임

## □ 질의(64)

- 수원천 복개구간을 철거하여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고자함(현재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
- 콘크리트구조물로 복개되어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으로 보아 생태계훼손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 콘크리트구조물로 복개되어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구간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으로 산정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65)

-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실제 지목이 다른 토지인 경우, 예를 들어 포장되어 있는 도로 부지나 무허가 건물들의 지목이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생태계 훼손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1호의 훼손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목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2호의 시설물 설치 토지를 생태계훼손면적에서 제외토록 함은 설치된 당해 시설물로 인해 생태계 형성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규정 시행일(2001.10.8) 이후 설치된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 적용이 곤란하며, 동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임

□ 질의(66)

- 질의1 : 생태하천 조성시 저수호안, 하상(물에 잠긴 부분), 둔치, 제방 등이 포함된 경우 훼손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의2 : 하상에 여울, 보, 어도개량, 실개울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우에도 훼손면적에 해당하는지?
- 질의3 : 저수호안, 둔치 등이 콘크리트나 시멘트 블록 등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경우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로 훼손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 질의1: 사업면적에 포함된 호안, 하상, 둔치, 제방 등도 훼손면적에 포함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 굴착,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또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호안, 하상, 둔치, 제방이라 하여도 원형보존지역을 제외한 개발지역은 생태계훼손면적에 포함됨
- 질의2: 여울, 돌무더기 설치, 어도개량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라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의 훼손행위가 발생하면 훼손면적에 포함됨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현재상태의 생태환경을 기준으로 훼손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 좋은 생태환경이 조성된다 하여도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 질의3: 저수호안, 둔치 등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시멘트 블록 등의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이미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 즉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훼손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함

□ 질의(67)

-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부지에 제방 사면(호안블럭, 돌망태, 돌붙임)과 제방 독마루(사리부설, 콘크리트, 아스콘 등으로 포장)가 있다면 제방사면 및 제방 독마루가 훼손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한 하천관리대장을 훼손면적 산정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가능한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과 토지 중에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은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사업부지의 제방 사면이 콘크리트, 돌망태, 호안블럭, 돌붙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마루가 콘크리트 아스콘 등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면 시설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토지 중에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으로 보아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하천관리대장은 공식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 질의(68)

- 산업단지의 최종 실시계획승인시('09.11월) 확정 측량에 따라 전체 사업면적이 면적이 증가되었음
- 지적법에 의한 훼손면적 산정을 위하여 증가한 면적을 전, 답, 대 등 지목별로 배분하여야 하나 확정측량에 따라 증가한 면적은 각각의 지번, 지목별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지목별 배분방법으로 당초 토지조서상의 전체 면적에 대한 각 지목별 구성비율에 증가면적을 곱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확정측량에 따라 전체 사업면적이 당초보다 증가(12,277㎡)되어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 적용 시, 확정측량에 따라 증가한 면적을 각각의 지번, 지목별로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토지조서상의 전체면적에 대한 각 지목별 구성비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계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질의(69)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따른 생태계 훼손면적 제외 관련
-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면적만 훼손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시설물을 포함한 토지지목 면적 전체를 훼손면적으로 산정하는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의 지목에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은 이미 훼손된 것으로 보아 시설물이 설치된 면적만큼은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음. 다만, 동일 지목(부지)내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면적은 훼손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함

## □ 질의(70)

- 콘크리트로 설치된 구거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훼손면적에서 제외 가능한 지 여부?

- 콘크리트 구거가 설치된 토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지목에 해당되지 않은 지목으로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동조항제2호 규정에 따라 훼손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함
- 하지만 동 시설물이 무허가인 경우, 훼손면적 제외를 위해서는 본 제도 시행('01.10.8) 이전에 설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 질의(71)

- 사업부지 임야 178,529㎡에 대하여 벌목을 한 상태임.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자연생태계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벌목한 임야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승인 취소가 되어 정산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벌목하는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 질의 1, 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을 생태계 훼손면적으로 산정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질의내용과 같이 임야의 수목을 벌목하는 행위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동 훼손행위가 발생된 지역의 면적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함

## 〈참고 2〉 생태계보전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 질의 2 :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어 사업이 종결된 경우라면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당시 산정한 생태계 훼손면적과, 실제 훼손된 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질의(72)

- 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면적(120천㎡)과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60천㎡)이 다른 경우 부과 대상 면적은 어느 면적을 적용하는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의 규모, 생태계 훼손면적 등을 부과권자인 환경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권자는 1월 이내에 부과금액 등을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부과 면적은 최종 인허가 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 IV. 지역계수 적용 관련

### □ 질의(73)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유통단지를 '04.11월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산정방법이 종전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도입(2001.10.13) 이전인 1999년12월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99.12 :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농림·준농림→준도시)
  - '0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의제(준도시→관리지역)
  - '04.7~10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04.12 : 실시계획 승인신청 /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지방자치단체→법인)
  - '05.6~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05.10 : 실시계획 승인(용도지역 변경없음)
- 부담금 부과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일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계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추진 중인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최초 신청일은 실시계획승인 신청일인 '04.12월이므로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부칙('01.4.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과 지역계수(1~4)를 곱하여 산정·부과하게 됨
  - 동 부담금 산정시 적용되는 지역계수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처분 시점인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부과금 산정시까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0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 □ 질의(74)

- 지역계수 적용시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부여된 경우의 지역계수 적용 방법은?

- 동일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부여된 토지를 대상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 적용시에는 부과대상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한 용도지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하여 할 것임

□ 질의(75)

- 골프장 및 콘도 등 리조트단지 건설을 위하여 2004.1 용도지역 변경(준농림지역 → 준도시지역 :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아니함), 2004.12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2005.3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경우
- 질의 1~2 :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보아 지역계수 1 또는 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준농림지역으로 지역계수 2를 적용하는지
- 질의 3 : 사업부지는 '87년 ○○항 항로조성을 위한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된 지역이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가능 여부
- 질의 4 :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제방 및 구거는 실제 개발과는 무관하여 현재의 상태를 존속시킬 경우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시 훼손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의 1~2의 경우,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4.1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전의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의 지역계수인 “2”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부칙('02.12.31) 제2항의 규정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2003.1.1 이전부터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인 경우에 적용됨
- 질의 3의 경우, 사업대상 지역이 '87년 준설토투기장 조성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적합한 생태적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 질의 4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부지내에 포함된 면적인 경우에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 없이 원형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대상 면적에서 제외됨

□ 질의(76)

- 2008년 10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2009년 3월 승인예정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이전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지역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역계수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에 따름
- 따라서,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 질의(7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08.3) : 70,000㎡(태양광발전소)
- 용도지역 변경('08.5) : 관리지역(준농림) → 계획관리지역
- 태양광 발전소 인가('08.12) : 70,000㎡
- 사업시행 : 훼손면적(45,000㎡), 원형보전 24,500㎡, 제외지목 500㎡
- ※ 원형보전 중 약 10,000㎡에 대해 동일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예정
- 상기 사업장의 경우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된 전체면적(70,000㎡)을 사업인가 고시하였으나, 실제 사업시행은 45,000㎡ 부분에 대하여 시행하고 원형보전지역을 24,500㎡ 남겨두고 준공을 받은 상황임
- 현재 사업시행자가 태양광발전소의 채광량을 늘이기 위해 원형보전지의 토석을 채취할 계획으로 원형보전지(약 10,000㎡)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하는지?
- 개발면적이 3만㎡ 미만의 토석채취 허가지역까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토석채취허가 지역에 대한 지역계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참고 2〉 생태계보전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에서 “개발면적”이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인·허가 면적(70,000㎡)을 의미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 산정 시 동일사업자가 연접지역에서 행하는 토석채취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변경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임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역계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용도에 따르나,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부과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에 따라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질의(78)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된 “(토지의 용도 :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된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의 용도지역 적용은?
  - 1994 :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결정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
  - 1998 : 도시계획결정 고시
  - 2006 : 실시계획 승인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제2항 중 괄호 내의 단서조항은 '01.10.8부터 시행된 규정인 바, '01.10.8 이전에 부과대상 지역의 용도지역이 이미 변경된 경우라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 질의(79)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근거인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 제외 조항에 명시 되어있지 않더라도 지역 농협에서 진행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농업협동조합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 중앙회 등의 업무나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에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경우 법률들이 상호 충돌하게 되는데, 부과금 면제와 관련 판례(2013두23517)는 농업협동조합법이 부과금 근거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상 지위를 가지므로 타 법에 대해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우선 적용되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질의(80)

-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면, 국세나 지방세와 같이 납부독촉 최초 1회만 소멸시효를 갱신시키는지, 아니면 과태료와 같이 납부독촉 시마다 소멸시효를 갱신시키는지 질의

-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 “금전의 금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권리로 볼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시효를 5년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5년이내 납부 독촉 등 부과 조치를 한다면 해당 조치일로부터 계속하여 소멸시효는 갱신됨